

[일련번호 : 86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착공신고서 제출 서류 검토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◻◻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◻◻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제9장 제5절(공사계약의 이행) 5. 착공·공정보고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, 공사공정예정표, 안전·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118조(공사 관련서류 검토·보고)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또한 「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시행관련 계약업무 추진계획」(재무과-2067호, '22.2.7.) 및 「양천구 도급·용역·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관리 매뉴얼」에 따르면, 발주부서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을 착공(착수)하는 경우 업체로부터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, 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(안전

관리계획서)를 제출받고,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.

따라서 공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, 도급·용역·위탁 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, 사업장 안전점검과 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과는 ‘2023년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(데크길)’ 등 19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·추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[표] 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 내역

연번	건명	계약일	계약금액(원)	비고
1	2023년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(데크길)	2023-03-28	43,704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2	○○공원 관리사무소 리노베이션 철거공사	2023-07-31	29,047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3	○○공원 수목식재 공사	2023-09-06	46,424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4	○○공원 관리사무소 리노베이션사업(통신)	2023-10-11	35,291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5	2024년 공원 시설물 정비사업(연간단가)	2024-02-07	134,50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6	공원 내 CCTV감시 저해 수목 정비공사	2024-06-26	54,80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7	○○공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소규모 정비공사	2024-07-22	44,79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8	○○공원 산책로 및 노후 벤스 정비사업(주민참여)	2024-10-04	117,091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9	○○공원 맨발휴길 정비공사	2024-10-21	40,735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0	○○공원 데크길 도색 및 정비공사	2024-10-24	44,52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1	○○공원 노후 화장실 철거공사	2024-11-11	23,77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2	○○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공사	2024-11-11	48,411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3	○○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공사	2025-04-23	36,194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4	○○공원 소규모 정비공사	2025-05-12	48,31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5	○○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사업	2023.10.26.	199,374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6	○○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사업	2023.11.09.	101,158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
연번	건명	계약일	계약금액(원)	비고
17	○○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사업	2023.11.28.	350,35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8	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연간단가(2024)	2024.03.29.	119,53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19	○○어린이공원 테마놀이터 조성사업	2024.06.21.	94,730	안전관리계획서 미징구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과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공사 착공 및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